

大邱直轄市達西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運用條例中 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1992. 11. 7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10. 13
- 다. 회부일자 : 92. 10. 13
- 나. 상정일자 : 92.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개선, 보완하여
- 달서구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조문 자구수정 및 적용법령 조문 변경
- 대불금 분할 상환 기준 변경
- 결손 처분 해당사유 및 결손 처분 절차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8조, 제21조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수정과 저소득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대불금 분할상환 기준변경 및 체납대불금 결손처분에 있어서 현행 규정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구의료 보호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대불금 결손 처분토록 절차가 변경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달서구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는 의견임.

나. 반대 : 없음

5. 수정안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첨부 : 조례개정(안)1부.

大邱直轄市達西區醫療保險基金特別會計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2.

제안자 : 달서구청장
(사회과)

1. 제출근거

-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8조, 제21조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

2. 제출사유

-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일치되게 개선, 보완하여
- 달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조문 자구수정 및 적용법령 조문 변경
- 대불금 분할상환 기준 변경
- 결손처분 해당사유 및 결손처분 절차 변경

大邱直轄市達西區醫療保險基金特別會計設置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 3 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 4 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 5 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6 조 (수 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 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 8 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 10 조 (준 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現 行	改 正 (案)	근 거 법 령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 1 조 (목 적)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법 제 21 조
제 4 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 보호법 시행령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제 4 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제 21 조의 규정 에 의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21 조
제 7 조 (지 출) ①의료보호시설의 장이.....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제 7 조 (지 출)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삭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17 조
제 8 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의료보호를 정지한다.	제 8 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의료보호법 제 16 조
제 9 조 (결손처분)의회의 승인을 얻어..... 3. 기타 정수가 전혀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의료보호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 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 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에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서 같 음한다.	제 9 조 (결손처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 장의 확인과 구의료보호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 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4. 삭제	의료보호법 제 18 조